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853호
-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20년 8월 12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 활동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 이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5조)
- 인권위원회 심의(안 제6조)
-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됨.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시장의 책무(제3조), 기본계획 수립(제4조), 체육인 인권 교육(제5조), 인권위원회의 심의(제6조),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제7조)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의 필요성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9년 1월 체육분야 '미투' 확산과 '20년 6월 고(故)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시책에 관하여 명문화하고 있음('20년 8월 시행)

현재 서울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동 조례안은 체육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별도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안」 2020.4.제정)를 시행 중임.

□ 세부내용 검토

- 동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서울시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제2조(정의)에서 “인권”, “선수”, “체육지도자”, “경기단체”, “체육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1호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규정을 적용하여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함.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호 “선수”와 제3호 “체육지도자”도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그 밖에 제4호 “경기단체”는 서울시체육회와 그 종목단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종목단체, 서울시 (학교, 직장 등) 운동경기부를 포함하고 그 소속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제5호에서 “체육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정책 수립과정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노력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또한 제6조(인권위원회의 심의)에서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포함내용 등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에서 경기단체나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교육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에서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¹⁾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2020.2.4.신설, 2021.2.19시행)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임.

현재 서울시체육회는 외부 전문 스포츠 심리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구 직장운동부 선수단, 시 산하 공사·공단팀 선수단, 구 생활체육지도자, 구 체육회·회원종목단체, 시체육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관련 수시 모니터링 기능 및 신고 창구 역할, 피해자에 대한 심리

-
- 1)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18.>
-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2. 19.]

적·정서적 지원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지원을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음.

기존 체육계의 존재하던 다양한 내부 신고체계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업무협약을 통해 익명성과 신분 보장이 가능한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음.

서울시체육회는 '19년 1월 스포츠 심리상담기관(케이스포츠심리상담)과 업무협약 후 홍보 부족, 예산상의 한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련 근거를 견고히 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고·상담의 문턱을 낮춰줄 것을 기대하는 바임.

□ 종합 의견

- 동 조례안은 체육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의 적극 공감하고 상위법 등의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
의 원 발 의 조 례 제 정 안 검 토

발의개요

- 안 건 명: 의안번호 1853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정안
- 발 의 자: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비례대표)
- 발의일자: 2020. 8. 12.(수)
- 제안이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인권위원회 심의(안 제6조)
-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안 제7조)

부서 검토의견 : 『수정 동의』

- 최근 스포츠 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관련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정에는 동의함
- 다만, 유사 조례인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각각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체육분야도 별도의 인권위원회를 두어 관련 전문가를 통해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체육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체육 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